

#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2
----------	-----

발의연월일 : 2024. 3. 6.

발의자 : 김상수, 조성대, 박경원,  
김동훈, 이정애, 이진환,  
정현미, 이수련, 한송연,  
김지훈(민)

## 1. 제안 이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공공관리제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협약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공공관리제 노선의 조정 및 운송수입금 관리를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마. 노선입찰 등 노선위탁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바.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 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6조)
- 아.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 자. 공공관리제 중차·제외, 안전운행 방안 및 운영 지침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22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 덧붙임

##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 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 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서비스 이행표준”이란 시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버스 서비스 공급 목표를 말한다.
8. “서비스평가”란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와 나목에 적용한다.

## 제2장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제4조(재정지원 협약) 시는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노선의 조정)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왕복운행거리의 20% 내 노선 변경사항

2. 기존 인가대수, 운행횟수의 10% 내 변경사항

3. 기존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의 30분 이내 변경사항

제6조(운송수입금 등 관리) ①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비용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3장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제7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는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

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는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노선입찰제 노선이 선정된 후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노선의 위탁) 시는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 4장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제9조(위원회 기능)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노선입찰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공공지원형 및 노선입찰제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4.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5.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6.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7.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대중교통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관리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3.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장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제14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의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쳐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에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과 급격한 운송비용의 변동분을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정산 및 보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지도·감독

제17조(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부당하게 재정지원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4.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5.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18조(조사·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와 협의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도의 서비스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서비스평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
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해당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
  - 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

제19조(운송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감액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호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전액 환수 조치 후 협약 및 면허 기간 내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제17조제3호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5 감액
  3. 제17조제3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의 불응: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감액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나 감액할 성과이윤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이윤 총액 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5(제2호) 또는 100분의 10(제3호) 감액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이윤 총액의 감액은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액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20조(공공관리제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 할 수 있다.

1.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17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가 공공관리제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시장이 공공관리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도에 즉시 보고한 후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관리제 제외)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공공관리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제 제외결정시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2조(안전운행 방안) ① 운송사업자는 별표의 시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의 지속적 관리
2. 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4.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
5.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23조(준용) ①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가 정한 공공관리제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24조(업무위탁) 시장은 공공관리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또는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공공관리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양주시 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제22조 관련)

## 남양주시 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

시민의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양주시 공공관리제 버스는 아래의 서비스 이행표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 노선별 계획된 운행횟수의 95% 이상 준수
2. 배차간격 준수율 90% 이상 준수
3. 승객 안전을 위해 인사사고 “Zero” 목표
4. 정차(공공관리제 노선) 정류소에 버스정보 100% 제공  
(BIT, 노선도, 시간표 등)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공관리제 노선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차액을 지원하여 운영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출내역(2027년까지 공공관리제 순차전환)
  - 공공관리제 전환 1대당 지원금액(194백만원) X 전환예정대수(90대) = 17,460 백만원
  - 재정분담비율 : 도비30% [5,238백만원] 시비70% [12,222백만원]
- 연도별 전환 대수
  - 2024년 20대, 2025년 추가10대(총30대), 2026년 추가20대(총50대), 2027년 추가 40대 (총 90대)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3,880	5,820	9,700	17,460	17,460	17,460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3,880	5,820	9,700	17,460	17,460	17,460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본예산 편성 완료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교통국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b>세 입</b>		3,880,000	5,820,000	9,700,000	17,460,000	17,460,000	36,860,000
	도비보조금	1,164,000	1,746,000	2,910,000	5,238,000	5,238,000	11,058,000
	자체세입	2,716,000	4,074,000	6,790,000	12,222,000	12,222,000	25,802,000
<b>세 출</b>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3,880,000	5,820,000	9,700,000	17,460,000	17,460,000	36,860,000
<b>재원 조달</b>							
의존 재원	소 계	1,164,000	1,746,000	2,910,000	5,238,000	5,238,000	11,058,000
	보조금	1,164,000	1,746,000	2,910,000	5,238,000	5,238,000	11,058,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716,000	4,074,000	6,790,000	12,222,000	12,222,000	25,802,000
	지방세	2,716,000	4,074,000	6,790,000	12,222,000	12,222,000	25,80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국가 또는 시·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지방공기업법」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도지사는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과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산정 및 조정 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